

의안번호	제698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
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98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행정기구 명칭 변경(경제부지사→정무부지사)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경제부지사” 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 로 변경함.
 -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 -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(안 제2조)
 -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(안 제3조)
 -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4조)
 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5조)
 -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6조)
 -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(안 제7조)
 -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안 제8조)
 -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9조)
 -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0조)
 -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안 제11조)
 - 충청북도조례 제5128호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 제12조)
 -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 제13조)
 -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(안 제14조)
 - 충청북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5조)
 -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6조)
 -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7조)
 -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18조)

-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19조)
-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20조)
-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안 제21조)
-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(안 제22조)
-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(안 제23조)
-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24조)
-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(안 제25조)
-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(안 제26조)
-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(안 제27조)
-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안 제28조)
-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안 제2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5조(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부지사”로 한다.

제6조(「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

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7조(「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8조(「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5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각각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9조(「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0조(「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1조(「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2조(「충청북도조례 제5128호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조례 제5128호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3조(「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4조(「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5조(「충청북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6조(「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7조(「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8조(「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19조(「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0조(「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1조(「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2조(「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3조(「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4조(「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5조(「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6조(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7조(「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8조(「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29조(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구성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제5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2.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담당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3.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4.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) ① (생략)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가</u>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7조(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5.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	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

<p>관장하는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----- <u>부지사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6.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7.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8. 충청북도 미세면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협의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<u>경제부지사</u>, 미세면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, 청주시 미세면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⑤ 협의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은 <u>경제부지사</u>로 하고,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	<p>제7조(협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</p> <p>-----.</p>

9.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10.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제6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 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·④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11.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 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12. 충청북도조례 제5128호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현행	개정안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	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<p>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13.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14.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2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15. 충청북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16.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수소 자문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수소 자문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17.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</p> <p>-----</p>

<p>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-----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18.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19.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소관하는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20.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 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~ ⑥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21.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 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14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22.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<u>경제부지사</u> 로 하고, 부위원장은 <u>균형건설국장</u>	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

으로 한다. ③ (생략)	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23.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
설치·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의장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<u>경제부지사</u> 가 되고,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~ ⑥ (생략)	제3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24.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4조(공동회장) ①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충청북도 <u>경제부지사</u> ,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위촉위원 중 선출한 3명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, 공동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. ② (생략)	제4조(공동회장) ① -----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25.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지식재산위원회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 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④ ~ ⑨ (생략)	제10조(지식재산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. 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26.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 가 되고, 부위원장은 <u>경제통상국장</u> 이 된다. ③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27.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 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(생략)	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28.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·구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로 하고, 부위원장은 철도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5조(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·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29.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<u>경제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된다.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----- ----.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 법령

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】

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.

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다만,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
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
3. 삭제
4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
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수행
3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원묵